

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

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
아래 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

기업명 (인증번호)	대표자명 (소재지)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	처분내용	처분 일자
		근거규정	처분사유		
주식회사 보삼바이오산업 (제2022-404호)	박오리 (전남광주 무안군)	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제1항제5호	인증요건 미충족	사회적기업 인증취소 및 인증제한(3년)	'26.9.10.

2026. 9 10

광주시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

